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31호서식] <개정 2021. 8. 27.>

건설기계정비업 등록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18일

신청인	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)	주민등록번호(사업자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)
	주소 (전화번호:)	

등록종별	[ ] 전기종 종합건설기계정비업 [ ] 굴착기 종합건설기계정비업 [ ] 지게차 종합건설기계정비업 [ ] 기중기 종합건설기계정비업 [ ] 덤프 및 믹서 종합건설기계정비업 [ ] 부분건설기계정비업 [ ] 원동기 전문건설기계정비업 [ ] 유압 전문건설기계정비업 [ ] 타워크레인 전문건설기계정비업
사업장규모	대지: ㎡, 건물: ㎡
사업장소재지	

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2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

시장・군수・구청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사무실 및 건설기계정비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. 건설기계정비기술자의 명단 3. 건설기계정비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국가기술자격증 사본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처리 절차

신청서 작성	➔	접수	➔	검토	➔	결재	➔	등록증 작성	➔	등록증 발급
신청인		시・군・구		시・군・구		시・군・구		시・군・구		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